

2019년도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25.(화요일), 11: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8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00건(안건번호 제2019-55057호~56699호)
 - 회의결과: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면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 1건(안건번호 제2019-55057호)은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999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99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8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고 그대로 공개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공개 의견에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55057호~5669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000건임

(보호원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5505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면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들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5505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하지만 게시자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저작권보호원 차원에서 게시자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저작권법 준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본 안건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게시자는 휴대폰 매장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마치 90년대 초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해 준 것처럼 휴대폰을 구입하면 영화나 음악 등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휴대폰 매장 고객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인식 없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가

아니더라도 저작권법 침해사실에 대해 법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수는 있음

하지만 보호원이 본 건 게시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하지 않고 게시자에게 직접 저작권법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를 할 방법이 없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저작권법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와 관련된 공문이 아니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에서 불법복제한 출판물,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고, 오프라인으로 배송할 경우 실제로 불법복제물이 배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불법복제물 판매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서 민원 신고가 있더라도 보호원이 불법복제물을 구입하여 불법복제물이 실제 배송되는지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없고, 이를 위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온라인에서 저작권침해 예비단계가 시작되어 오프라인에서 저작권침해의 결과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음

이 순서와 반대로 본 건의 경우 온라인 게시물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면 해당 매장 자체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최신 영화를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적 요소가 섞여 있음

보호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고, 오프라인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있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해서는 보호원 업무영역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요컨대 게시자가 실제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증거 자료가 없어 부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

- B 위원 : 보호원 업무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작권침해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55057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55058호~5513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이 모바일 웹하드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가 PC버전 웹하드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모바일버전 웹하드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상도 조정 등 인코딩을 거친 후 모바일버전 웹하드에 재업로드 됨
PC버전 웹하드와 달리 모바일버전 웹하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PC버전 웹하드에 있는 불법복제물과 모바일버전 웹하드의 파일이 별개의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모바일버전에 최적화되도록 인코딩한 후 재업로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첨부파일도 다르고 해상도도 다르며 저장 위치

및 접속 경로가 상이하어 PC버전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이 삭제되더라도 모바일버전 웹하드에서는 삭제되지 않음

- B 위원 : 모바일버전의 웹하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글 자막이 같이 나오는지 질의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PC버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말 자막이 하단에 제공됨

- A 위원 : PC버전 웹하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복제 또는 전송과 달리 불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 모바일버전 웹하드에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55058호~55138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55139호~5669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55139호~56699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A 위원 :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전송한 것이 명백하므로 시정 조치를 권고하자는 의견임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경우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B 위원 : 불법복제물 전송 건이므로 시정권고 의결을 하되 심의일 기준으로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중단 된 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5139호~5669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5057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2019-55058호~56699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2.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